

4. 정관(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)

5.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

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,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. [\[개정 2025. 4. 1.\]](#)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, 이를 고시해야 한다.

[[본조신설 2020. 12. 23.](#)]

[[종전 제13조의6은 제13조의11로 이동 <2020. 12. 23.>](#)]

**제13조의7(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)** ①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(이하 "인증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해야 한다. [\[개정 2025. 4. 1.\]](#)

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[\[개정 2025. 4. 1.\]](#)

③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[\[개정 2025. 4. 1.\]](#)

1.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

    가. 대학에서 물류 및 건축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

    나. 물류 및 건축 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

    다. 물류 및 건축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

    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

3. 인증기관 소속 전담조직의 책임자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

④ 인증기관의 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한다.

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, 심사 원본 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해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심사대장 및 심사 원본 자료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. [\[개정 2024. 11. 13.\]](#)

⑥ 인증기관의 장은 분기별 인증심사 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 및 인증심사 전문인력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\[개정 2025. 4. 1.\]](#)

[[본조신설 2020. 12. 23.](#)]

**제13조의8(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)**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6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② 인증기관의 장은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[본조신설 2020. 12. 23.](#)]

[[제목개정 2025. 4. 1.\]](#)

**제13조의9(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)**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.